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2011년도부터 태봉안행사와 참외축제를 통합하여 생명문화축제를 개최고자 함에 따라 추진위원회 명칭변경과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제5항의 겸직금지 규정 등과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규정을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“성주군 참외축제 추진위원회”를 성주군 축제 추진위원회로 변경**(안 제1조제)**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(겸직 등 금지) 의원 겸직 금지규정과 조직개편에 따라 “군의회 의원” 삭제하고 “친환경농정과”를 “농정과”로 하고자 함.**(안 제3조 제3항)**

4. 관련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(자문기관의 설치 등)

○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(겸직 등 금지)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.

□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

○ 매년 각각 실시해오던 “참외축제”와 “태봉안행사”를 2011년부터 통합하여 개최함으로써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

○ 성주의 농특산물 축제와 문화축제를 함께 어우름으로서 별고을 명성에 걸맞고 종합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이 불가피하고

○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「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」의 규정에 적합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